

제주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133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1334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6. 29 선고 2019가단648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X(개명 전 성명 :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6. 23.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6. 29. 선고 2019가단648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X는 12/7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는 각 8/77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3. 12. 8. 접수 제581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주지방법원 1995. 9. 20. 접수 제60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3. 12. 8. 접수 제581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주지방법원 1995. 9. 20. 접수 제60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보태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가. 2)항 1행, 3의 가. 3) 가)항 3행부터 4행의 ‘C’을 ‘X’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가. 2)항 2행 ‘H’을 ‘G’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가. 2)항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들은 1995. 9. 20.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 4)항 마지막 줄 ‘F은 1972. 10. 12. 사망하였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다. 3) 가)항 1행 ‘T이’를 ‘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G 및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4/11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X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2/77(피고 X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지분 3/7 × 원고의 상속지분 4/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는 각 8/77(피고 D, E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각 지분 2/7 × 원고의 상속지분
4/11)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건, 판사 정양순, 판사 이범휘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제주시 V 대 499㎡
2. 제주시 W 도로 60㎡, 끝.

